#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56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이규민·김승원·김영진

김용민 · 김원이 · 민형배

윤건영 • 이수진 • 인재근

정청래 · 최강욱 · 허 영

황운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 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 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시행계획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함. 저출산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등의 직접 지원 예산이 1 7.9조인 38.4%을 차지하고, 문화·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분야가 약 28.7 조인 61.6%.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저출산 대응 직접 지원이 절반을 채 못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저출산과 연결고리가 없는 사업이 포함돼 매년 지적을 받는 상황임.

그런 가운데 영유아 가정에 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고, 부모도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 근로로 인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수당을 만 2세 미만에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에 5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예상되는 예산은 16조 8,628억 원으로 간접 비용 28.7조 원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충분히 상향가능함.

따라서 저출산 대응예산의 간접지원을 줄이고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영아 수당을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 향하고자 함.

이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 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법률 제 호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1. 2세 미만 아동: 월 100만원
- 2.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 월 50만원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를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 지급액) ① 다음 각 호의 구분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에 따라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 2세 미만 아동: 월 100만원 2.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 월 50만원 ② ~ ④ 삭 제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 방법 등) ①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 -----2세 생일이 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 2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7세 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급 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하다. ----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	는	경우	·에는	(٥	.동
수	당의	전부	또!	느 일	]부를	같	은
법	제42	2조의	자.	산형	성지원	신사	-업
에	따라	· 개설	설된	수급	<sup>}</sup> 아동	명	의
의	계좌	에 약	입금	하여	지급	할	수
٥) ا	1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